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가단21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제천시 D]과 피고 사이의 2022. 4.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판사 김새미

별지1

부동산 목록

1. 충청북도 제천시 대 126㎡

2. 충청북도 제천시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시멘트블록조 시멘 기와지붕 단층 주택 14평 골.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위
원
고
의

차
여
채
권
을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E 주식회사는 2018. 7. 26. 위 C에게 금 1,000만 원 을 계약만료일 2021. 6. 24.,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4%로 하여 대여 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E는 2020. 5.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원
고
의
금

채
권
이
금

7,661,614원에 대하여 2022.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가.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외 F이었는데, 위 F은 2022. 3. 26.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F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F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2. 4. 27.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조).

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 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 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ㄷ
ㄱ
ㄴ

ㄹ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

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

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